

폐수배출(수질오염방지)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허가(신고)번호	제	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5일
신고인	사업장명				
	대표자				
	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신고내용	당 초		변 경		
	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		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		
변경신고 사유				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3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시작일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
------	----	-----	----

처 리 절 차

※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